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프랑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3차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음.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연금수급가능연령(minimum pensionable age)을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해마다 4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여기간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늘리며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임. 이러한 연금개혁을 볼 때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프랑스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장기간 유럽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 및 고실업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함.

〈표 1〉 연금개혁 이전(2009년)의 실업률 및 연금관련 현황

(단위: %, 세)

구분		프랑스	OECD 평균
실업률(25세 이하 실업률)		8.8(21.4)	8.3(18.3)
중고령자 고용률		39.0	54.5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비율	12.4	7.2
기대수명	출생 시	80.9	78.9
	65세 당시	85.4	83.4
65세 이상 인구	근로연령인구 대비	28.0	23.8

자료: 유호선(2011), 「비스마르크안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0011년 봄 호 등에서 일부 발췌함.

●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 적자 등으로 2009년 정부의 전체 재정적자는 1,450억 유로에 이르고, 전체 실업률은 8.8%(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1.4%)를 기록함.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정부의 이전지출(연금재정 지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85.4%임.

- 따라서 노동시장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연금 및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이에 사르코지 정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3차 연금개혁을 추진함.

- 즉,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연금개혁의 목표를 설정함.

〈표 2〉 프랑스의 제1·2차 연금개혁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차 연금개혁 (1993년)	• 급여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연동기준을 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 • 200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을 150분기에서 160분기로 조정 •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을 최고임금 10년 평균에서 25년 평균으로 기간 확대 • 연금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FSV를 설립하여 비기여 급여들의 재원으로 사용
2차 연금개혁 (2003)	• 공무원 연금의 조건을 일반 공적연금의 조건과 동일하게 조정 •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완전 노령연금을 위한 기여연수를 2020년까지 42년으로 확대 •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보완으로 최저연금액은 최저연금의 85% 수준으로 보장

주: FSV는 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를 의미함.

■ 2010년 연금개혁의 주요 골자는 연금수급가능연령(minimum pensionable age)을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해마다 4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여기간은 2020년까지 4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 또한,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58~61세 사이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가능연령 이전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
-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함.
- 다만,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급여수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실업을 위한 크레딧(credit) 부여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양육크레딧 계산시 기준소득에 모성급여액을 추가하여 계산하도록 함.

- 특히 연금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대상인 연 69,783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1%로 인상하고 주식보유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함.
- 또한 자본소득세를 1% 인상하고 주식 및 채권 매각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

■ 프랑스 연금개혁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경제상황과 연금재정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랑스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연금제도 개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연금의 기여기간과 수급기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연금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가입기간 확대 방안(예: 새로운 크레딧 제도 도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kiri**